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 관련 FAQ

2021. 6.



김 해 상 공 회 의 소

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 사업주 포함인지?

☒ 아님

☐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용직·기간제·상용직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 상시 근로자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판단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하고 소속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시 근로자대표에 대한 권한을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근로자대표를 선정 시 별도의 권한을 지정할 필요가 없으나, 근로시간제도와 관련하여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모으는게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자대표의 선정방법(근로기준법-8048, 2007.11.29.)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업단위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사업 단위에서, 사업장단위로 도입하는 경우는 사업장단위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으면 근로자대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는 자(예:노동조합지부장)가 됩니다.
-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정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모으는 적당한 방법이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직접 투표에 의하지 않아도 되며, 1인의 대표는 물론 복수의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에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음. 다만, 근로자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지 못한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음.

3. 30인 미만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의 한시적 인정 관련하여 ①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이후 고용부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②준비 서류는 무엇인지?

☑ 근로기준법 제 53조3항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를 위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별도의 신고절차가 없습니다.

- 준비서류라 함은, 근로자대표와 체결한 서면합의서이며 이는 노사가 자유롭게 작성하시되,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 또는 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반드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53조4항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와 위 특별연장근로는 법적 요건이 상이하며 상기 언급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2021.7.1.부터 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4.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가 소사장제를 말하는지?

-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가능한 제도이며, 소사장제는 도급의 한 형태로 별개의 사업주이므로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는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제도 도입을 위해 ①사업장 밖의 근로일 것과 ②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 ③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간을 규정해야 하며,
 -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외근이 많은 업무이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전제 하에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합의서를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간의 서면합의로 작성하되, 실제 적용하게 되는 근로자들에게는 개별 합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5.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예시는?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입니다.
-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첫째 주에 45시간(9시간*5일), 둘째 주에 35시간(7시간*5일) 근무 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첫째 주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기에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례) 단위기간(2주)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고,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주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합계
1주	일정표	7	7	7	7	7	-	-	35
	실제근로	7	7	7	8	7	-	-	36
2주	일정표	9	9	9	9	9	-	-	45
	실제근로	9	9	9	9	9	4	-	49

- ▲ ①2주간 총 근로시간이 85시간이므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 ②둘째 주의 근로시간이 49시간으로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①에서 이미 포함)
- ▲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는 ①과 ②를 합한 6시간에서 이미 계산에 포함된 1시간(②)을 제외한 5시간입니다.

$$\text{산정식} : 36\text{시간} + 49\text{시간} - 80\text{시간} = 5\text{시간(연장근로시간)}$$

6. 교대제 근무에 대한 예시는?

- (2조 교대제) 2개의 근무조를 활용하는 교대제 유형으로 2조 2교대가 일반적
- 근로기준법상 최장 연장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전일제/연속형 교대제를 운영할 수 없으며 비전일제 또는 불연속형 교대제를 운영

● 전일제/불연속형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A조	12	12	12	12	8	휴	휴	12	12
B조	12	12	12	12	8	휴	휴	12	12

- ◆ 주간 총 가동시간 : 112시간(가동률 66%)
- ◆ 주간 총 근로시간 : 56시간
- ◆ 근로일/휴일 : 5/2
- ◆ 심야시간대의 저렴함 전기로 활용, 비용절감효과

● 전일제/연속형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A조	24	휴	24	휴	24	휴	24	휴	24
B조	휴	24	휴	24	휴	24	휴	24	휴

- ◆ 주간 총 가동시간 : 168시간(가동률 100%)
- ◆ 주간 총 근로시간 : 89시간
- ◆ 근로일/휴일 : 4/3, 3/4
- ◆ 감시 단속적 업무에만 도입가능

● 비전일제/연속형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A조	6	6	6	6	6	휴	12	6	6
B조	6	6	6	6	6	12	휴	6	6

- ◆ 주간 총 가동시간 : 74시간(가동률 44%)
- ◆ 주간 총 근로시간 : 42시간
- ◆ 근로일/휴일 : 6/1
- ◆ 심야시간대의 근로를 하지 않음, 야간근로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됨

● 비전일제/불연속형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A조	7	7	7	7	7	7	휴	7	7
B조	7	7	7	7	7	7	휴	7	7

- ◆ 주간 총 가동시간 : 84시간(가동률 50%)
- ◆ 주간 총 근로시간 : 42시간
- ◆ 근로일/휴일 : 6/1
- ◆ 심야시간대의 근로를 하지 않음, 야간근로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됨

□ (3조 교대제) 3조 교대제 유형은 3개의 근무조를 활용하는 유형으로 대표적으로 3조 2교대와 3조 3교대로 구분

1) 3조 2교대 유형

- 전일제 3조 2교대는 휴게시간 미부여 시 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므로 16시간의 연장근로 발생. 따라서 1) 휴게시간 확보, 2) 탄력 근로제 활용 등의 방법을 통해 법정근로시간 허용한도 준수 가능

3조2교대 주5일 가동형	21일 주기	주간 5일, 야간 5일, 비번 5일, 휴일 6일	42일 주기	주간 10일, 야간 10일, 비번 10일, 휴일 12일	21일 주기	주간 5일, 야간 5일, 비번 5일, 휴일 6일
		1 2 3 4 5 6 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A	주 비 야 주 비 휴 휴	A	주 주 야 야 비 휴 휴 비 주 주 야 야 휴 휴	A	주 주 주 주 주 휴 비 비 야 야 휴 휴 야 야 비 비 휴 휴
	B	야 주 비 야 주 휴 휴	B	비 비 주 주 야 휴 휴 야 비 비 주 주 휴 휴	B	야 야 비 비 비 휴 주 주 주 주 주 휴 비 비 야 야 휴 휴
3조2교대 주6일 가동형	C	비 야 주 비 야 휴 휴	C	야 야 비 비 주 휴 휴 주 야 야 비 비 휴 휴	C	비 비 야 야 휴 휴 야 비 비 휴 휴 주 주 주 주 주 휴 휴 휴
3조2교대 주7일 가동형	12일 주기	주간 4일, 야간 4일, 비번 4일	21일 주기	주간 7일, 야간 7일, 비번 6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A	주 주 주 비 비 야 야 야 비 비	A	주 주 주 비 비 야 야 비 비 주 주 주 비 야 야 야 비 비		
	B	야 야 비 비 주 주 주 비 비 야 야	B	야 비 비 주 주 주 비 야 야 야 비 비 주 주 주 비 비 야 야		
3조3교대 주5일 가동형	21일 주기	주간 6일, 야간 6일, 비번 6일, 휴일 3일	35일 주기	주간 10일, 야간 10일, 비번 10일, 휴일 5일		
		1 2 3 4 5 6 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A	주 주 야 야 비 비 휴	A	주 주 주 주 주 비 비 야 야 야 비 비 주 주 주 주 주 비 비 야 야 야 비 비 휴		
	B	야 야 비 비 주 주 휴	B	야 야 비 비 주 주 주 비 비 야 야 야 야 비 비 주 주 주 주 주 비 비 야 야 야 비 비 휴		
3조3교대 주6일 가동형	C	비 비 주 주 야 야 휴	C	비 비 야 야 야 야 야 비 비 주 주 주 주 주 비 비 야 야 야 비 비 주 주 주 주 주 휴		

2) 3조 3교대 유형

- 불연속가동형 3조 2교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크게 문제되지 않고, 연속가동형 3조3교대는 반연근방식 활용 등으로 운용이 가능하나, 휴게시간 확보 등이 전제될 때 운용 가능

3조 2교대
주 5일
가동형

21일 주기 주간 5일, 오후 5일, 야간 5일, 휴일 6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A	주	주	주	주	주	휴	휴	오	오	오	오	오	휴	휴	야	야	야	야	야	휴	휴
B	오	오	오	오	오	휴	휴	야	야	야	야	야	휴	휴	주	주	주	주	주	휴	휴
C	야	야	야	야	야	휴	휴	주	주	주	주	주	휴	휴	오	오	오	오	오	휴	휴

3조 2교대
주 6일
가동형

21일 주기 주간 6일, 오후 6일, 야간 6일, 휴일 3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A	주	주	주	주	주	주	휴	오	오	오	오	오	오	휴	야	야	야	야	야	야	휴
B	오	오	오	오	오	오	휴	야	야	야	야	야	야	휴	주	주	주	주	주	주	휴
C	야	야	야	야	야	야	휴	주	주	주	주	주	주	휴	오	오	오	오	오	오	휴

3조 2교대
주 7일
가동형

3일 주기 주간 1일, 오후 1일, 야간 1일

	1	2	3	4	5	6
A	주	오	야	주	오	야
B	오	야	주	오	야	주
C	야	주	오	야	주	오

6일 주기 주간 2일, 오후 2일, 야간 2일

	1	2	3	4	5	6
A	주	주	오	오	야	야
B	오	오	야	야	주	주
C	야	야	주	주	오	오

□ (4조 교대제) 4조 교대제 유형은 4개의 근무조를 활용하는 유형으로 대표적으로 4조 2교대와 4조 3교대로 구분되고 4조 교대제의 주간 근로시간은 42시간으로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주40시간 근로제에 가장 적합한 교대제 유형

1) 4조 2교대 유형

● 8일 주기형 : 주2-휴2-야2-휴2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A조	주간	주간	휴일	휴일	야간	야간	휴일	휴일
B조	휴일	휴일	주간	주간	휴일	휴일	야간	야간
C조	야간	야간	휴일	휴일	주간	주간	휴일	휴일
D조	휴일	휴일	야간	야간	휴일	휴일	주간	주간

● 12일 주기형 : 주3-휴3-야3-휴3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A조	주간	주간	주간	휴일	휴일	휴일	야간	야간	야간	휴일	휴일	휴일
B조	휴일	휴일	휴일	야간	야간	야간	휴일	휴일	휴일	주간	주간	주간
C조	야간	야간	야간	휴일	휴일	휴일	주간	주간	주간	휴일	휴일	휴일
D조	휴일	휴일	휴일	주간	주간	주간	휴일	휴일	휴일	야간	야간	야간

● 16일 주기형 : 주4-휴4-야4-휴4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A조	주	주	주	주	휴	휴	휴	휴	야	야	야	야	휴	휴	휴	휴
B조	휴	휴	휴	휴	주	주	주	주	휴	휴	휴	휴	야	야	야	야
C조	야	야	야	야	휴	휴	휴	휴	주	주	주	주	휴	휴	휴	휴
D조	휴	휴	휴	휴	야	야	야	야	휴	휴	휴	휴	주	주	주	주

● 28일 주기형 : 주4-휴4-야4-휴4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A조	주	주	주	주	휴	휴	휴	야	야	야	휴	휴	휴	휴	주	주	주	휴	휴	휴	휴
B조	야	야	야	휴	휴	휴	휴	주	주	주	주	휴	휴	휴	야	야	야	야	휴	휴	휴
C조	휴	휴	휴	휴	주	주	주	휴	휴	휴	야	야	야	야	휴	휴	휴	주	주	주	휴
D조	휴	휴	휴	야	야	야	야	휴	휴	휴	휴	주	주	주	휴	휴	휴	휴	주	주	주

2) 4조 3교대 유형

12일 주기형 : 주3-휴1-오3-휴1-야3-휴1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A조	주	주	주	휴	오	오	오	휴	야	야	야	휴
B조	야	야	휴	주	주	주	휴	오	오	오	휴	야
C조	오	휴	야	야	야	휴	주	주	주	휴	오	오
D조	휴	오	오	오	휴	야	야	야	휴	주	주	주

16일 주기형 : 주4-휴1-오4-휴1-야4-휴2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A조	주	주	주	주	휴	오	오	오	오	휴	야	야	야	야	휴	휴
B조	야	야	휴	휴	주	주	주	주	휴	오	오	오	오	휴	야	야
C조	오	휴	야	야	야	야	휴	휴	주	주	주	주	휴	오	오	오
D조	휴	오	오	오	오	휴	야	야	야	야	휴	휴	주	주	주	주

20일 주기형 : 주5-휴2-오5-휴1-야5-휴2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A조	주	주	주	주	주	휴	휴	오	오	오	오	오	휴	야	야	야	야	야	휴	휴
B조	야	야	야	휴	휴	주	주	주	주	주	휴	휴	오	오	오	오	오	휴	야	야
C조	오	오	휴	야	야	야	야	야	휴	휴	주	주	주	주	주	휴	휴	오	오	오
D조	휴	휴	오	오	오	오	휴	야	야	야	야	야	휴	휴	주	주	주	주	주	주

28일 주기형 : 주4-휴4-야4-휴4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A조	야	야	야	야	야	야	야	휴	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휴	휴	휴	주	주	주	주	주	주	주	휴	휴
B조	주	주	주	주	주	휴	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휴	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휴	휴	휴	주	주
C조	오	오	휴	휴	휴	주	주	주	주	주	주	주	휴	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휴	휴	오	오	오	오	오
D조	휴	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휴	휴	휴	주	주	주	주	주	주	주	휴	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ooo(이하 '회사')와 ooo노동조합(이하 '조합')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3조 2교대 시행에 합의한다.

- 다 음 -

1. 시행시기 및 대상

- 1) 시행일자 : 2021년 00월 00일
- 2) 시행대상 :

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1) 주간근무 : 00:00 ~ 00:00 (휴게시간 : 00:00~00:00)
- 2) 야간근무 : 00:00 ~ 익일 00:00 (휴게시간 : 00:00~00:00)

3. 교대조별 근무일

교대근무 시 다음과 같이 12일 주기로 근무표에 따라 근무한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A조	주간	주간	주간	주간	비번	비번	야간	야간	야간	야간	비번	비번
B조	야간	야간	비번	비번	주간	주간	주간	주간	비번	비번	야간	야간
C조	비번	비번	야간	야간	야간	야간	비번	비번	주간	주간	주간	주간

4. 휴일

3조 2교대 적용을 받는 직원의 경우, 교대근무표에 따른 비번일을 휴일로 한다.

5. 생산능력 및 생산량 유지

회사와 조합은 3조 2교대 시행으로 인한 근무형태 변경시점의 인원 및 설비 등 제반조건을 기준으로 생산능력 및 생산량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6. 생산성 향상 관련 임금보전

회사는 3조 2교대 전, 후 임금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전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지급기준 :
- 지급기한 :

7. 기타

- 1) 3조 2교대 시행 이후 추가 논의사항이 필요한 경우 노사간 협의로 처리한다.
- 2) 회사와 조합은 근태율 향상을 위해 상호 협조와 노력을 한다.

2021. 0 . 0.

주식회사 O O 대표이사

(인)

노동조합 위원장

(인)

7. 휴일대체 시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는지?

- ☑ 휴일대체 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사업장 내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